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측기검정신청서 등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국 무 총 리 훈 령

●국무총리훈령 제599호

한시훈령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12월 24일

국 무 총 리 인

한시훈령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67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의 개정)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49호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3년 2월 28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71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3년 2월 28일까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포털의 효율적 개선 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국제범죄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 및 대응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인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관련부처 간 협의·조정과 추가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일부 국무총리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